

의안번호	2211552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0.
추계번호	25F384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
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5년간 총 801.9억원(연평균 16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3조제2항): 2026~2028년 3년간 총 -741.2억원(연평균 -247.1억원)
 - 한국농어촌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(안 제13조제3항): 2028~2030년 3년간 총 -60.7억원(연평균 -20.2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3조제2항)	-247.1	-247.1	-247.1			-741.2	-247.1
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(제13조제3항)			-18.1	-20.1	-22.5	-60.7	-20.2
합 계	-247.1	-247.1	-265.2	-20.1	-22.5	-801.9	-160.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2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8. 12. 31.	

2	안 제13조제3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7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---	-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제2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13조제3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30년 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안 제13조 제2항)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며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31.5억원
 - (재산세) 각 호별로 재산세 감면을 변화로 감면율이 동일한 2023년 기준 재산세 감면액(15.6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- (안 제13조제3항) 한국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2023~2024년 전년대비 증가율이

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(11.6%)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3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사업 종류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 25~50%, 재산세 감면율 50~75% 적용

[표 2] 현행 사업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

	감면율	
	취득세	재산세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18조·제20조, 「농지법」 제11조·제15조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	50%	— (~2022.12.31.) 50%
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	50%	75% (~2021.12.31.) 100% (~2022.12.31.) 50%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	50%	— (~2022.12.31.) 50%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·임대하는 부동산	50% 환매취득 시 100%	50%
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지	50%	—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	25%	—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	25% (~2022.12.31.) 50%	—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	50%	—

주: ()는 2020년 이후 감면율 변화

자료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3조제2항

- (추계방법)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며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취득세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31.5억원
 - 재산세 2023년 감면실적 유지: 15.6억원
 - 각 호별로 재산세 감면을 변화가 있어 2023년 동일한 감면을 수준의 감면실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12.6	256.1	272.0	288.0	257.2
- 취득세	184.7	228.2	241.5	261.5	241.6
- 재산세	27.9	27.9	30.5	26.5	15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47.1억원, 2028년 247.1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741.2억원(연평균 247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3조제2항)	-247.1	-247.1	-247.1	-741.2	-247.1
- 취득세	-231.5	-231.5	-231.5	-694.5	-231.5
- 재산세	-15.6	-15.6	-15.6	-46.7	-15.6

나. 한국농어촌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(안 제13조제3항)

(1) 제도 개요

-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 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7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2년(2022~2023년)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한국농어촌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최근 2년(2022~2023년)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.6%
 - 2018년 2.8억원에서 2021년 4.1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9.4억원, 2023년 10.4억원으로 증가
 - 2018~2021년까지 감면액이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 점을 감안하여, 향후 감면실적이 2022~2023년 연평균 증가율(11.6%)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5]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: 2018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.8	3.0	3.2	4.1	9.4	10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3) 추계결과

-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8~2030년간 총 60.7억원(연평균 20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재산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3조제3항)	-18.1	-20.1	-22.5	-60.7	-20.2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